

제주지방법원 2023. 4. 24 선고 2021가단670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호성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운

담당변호사 문건식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희

변 론 종 결 2023. 3. 20.

판 결 선 고 2023. 4.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D과 피고 B가 2020. 8. 28.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48,3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5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 B는 부부였다.

나. D은 2020. 8. 28. 피고 B에게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증여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피고 B는 2021. 9. 3.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D과 피고 B는 2021. 2. 9.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로서 D과 피고 B가 2020. 8. 20.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가액 48,3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성립 가능성이 있는 가액의 범위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설기계의 가액이 99,000,000만 원 가량인 사실, 피고 B가 이 사건 건설기계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할부금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B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증여받은 이후 할부대금 합계 75,825,410원을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사해행위로 지목하는 2020. 8. 20.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건설기계 가액 99,000,000원 가운데 피고 B의 할부대금 변제액 75,825,410원을 제외한 23,174,590원 가량만이 D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가액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2020. 8. 20.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가액은 23,174,590원에 한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증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를 운영하여 생긴 수입금 중 25,125,410원으로 할부대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변제액 75,825,410원 중 25,125,410원 부분은 D의 책임재산에서 변제된 것으로서 원고는 25,125,410원을 포함한 합계 48,300,000원(= 25,125,410원 + 앞서 인정한 가액 23,174,590원)의 한도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이 2020. 8.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증여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설기계를 그대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이후 이 사건 건설기계 운영 사업은 피고 B의 이름과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D과 피고 B 사이의 내부관계가 어떠했는지와는 별론으로 거래상대방인 제3자와의 관계에서 그 운영 사업과 관련한 채권채무 관계는 피고 B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건 건설기계 운영과 관련한 채권채무관계의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는 그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그 계약 상대방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D의 이름과 신용을 믿고 거래했다기보다는 이

사건 건설기계 소유 명의자인 피고 B를 계약 상대방으로 삼았다고 봄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 B가 이 사건 건설기계를 취득한 이후에는 이 사건 건설기계의 운영 수입금이 피고 B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것일 뿐, D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과 피고 B가 2021. 2. 9.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D과 피고 B가 이혼신고 이후에도 긴밀한 생활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이혼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80708 판결). 그러므로 피고 B는 D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증여계약은 재산분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건설기계의 재산가치는 앞서 본 것처럼 23,174,590원 가량이다.

② 피고 B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정도의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D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기여도와 아울러 재산분할의 부양적 성격을 고려할 때, 23,174,590원 정도의 재산을 이전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라 단정짓기 어렵다.

④ 더욱이 이혼 당시 D, 피고 B 부부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고, D은 피고 B에게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1인당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B로서는 D의 남아 있는 책임 재산에서 장래의 것을 포함하여 양육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해도 양육비를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양육비 채권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도 아니다.

3) 소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2020. 8. 20.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재남

건설기계의 표시

1. 중 기 명 : 덩프트럭

2. 중기등록번호 :

3. 형 식 : R490CBBX4

4. 중기차대번호 :

5. 등 록 년 월 일 : 2015. 09. 11.

6. 사용 본 거 지 :

7. 소 유 자 : , [끝]

